

|  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  | 2126611     |
| 의 퇴 인   | 최승재의원       |
| 회 답 일   | 2024.03.28. |
| 추 계 번 호 | 24D0213     |

#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## I. 비용추계 결과

- 대한민국순직국군장병유족회를 설립하는 경우 동 단체의 인건비, 운영비, 사업비 등 보조금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3억 8,200만원 등 2029년까지 5년간 19억 9,400만원, 연평균 3억 9,9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5 | 2026 | 2027 | 2028 | 2029 | 합계    | 연평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|
| 대한민국순직국군장병유족회를<br>국가유공자단체에 추가<br>(안 제3조 제10호 신설) | 382  | 390  | 399  | 407  | 416  | 1,994 | 399 |

## I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  | 안 제3조제10호<br>신설(회) |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5호 순직군경 및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하는 군인의 유족을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순직국군장병유족회를 국가유공자단체에 추가 | 의무규정 |

### 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#### 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| 추계여부 | 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 |
|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3조(회원) 제10호 신설 | ○    |                |

#### 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대한민국순직국군장병유족회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5호의 순직군경 및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따른 제2조제1항제1호의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하는 군인의 유족을 회원으로 하고 있으며, 2024년 3월 기준 회원수가 28명임
  - 2024년 3월 기준, 대한민국순직국군장병유족회는 공동회장 2인, 이사 3인, 감사 1인의 임원을 두고 있음
- 개정안에 따라 대한민국순직국군장병유족회를 국가유공자 등 단체로 설립 시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비용은 현재 국가보훈부의 ‘보훈단체 운영’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16개 보훈공법단체 중 회원 수를 기준으로 유사단체에 대한 지원 비용을 참고하여 추계하고자 함
  - 회원수를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보훈공법단체는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로 회원수는 4명이며, 그 다음은 4·19민주혁명회, 4·19혁명희생자유족회, 4·19혁명공로자회로 각각 138명, 180명, 240명임

[표 2] 보훈공법단체 현황

(단위: 명)

| 단 체 명          | 회원수(명)  | 설립 근거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|
| 광복회            | 8,869   | 국가 유공자 단체 설립법 |
| 상이군경회          | 105,040 |               |
|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   | 93,207  |               |
|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  | 58,302  |               |
|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    | 4       |               |
| 무공수훈자회         | 54,769  |               |
| 4·19민주혁명회      | 138     |               |
| 4·19혁명희생자유족회   | 180     |               |
| 4·19혁명공로자회     | 240     |               |
| 특수임무유공자회       | 3,888   | 특수임무유공자법      |
|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    | 122,074 | 고엽제지원법        |
| 대한민국6·25참전유공자회 | 42,409  | 참전법           |
|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   | 88,894  |               |
| 5.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 | 2,118   | 5.18민주유공자법    |
| 5.18민주유공자유족회   | 1,033   |               |
| 5.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 | 1,330   |               |

자료: 국가보훈부

-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함<sup>1)</sup>
- 안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, 법안 심의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

1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(2023.10)

|               | 2023 | 2024 | 2025 | 2026 | 2027 | 2028 | 2029 |
|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소비자물가상승률(CPI) | 3.4% | 2.4% | 2.2% | 2.2% | 2.1% | 2.1% | 2.1% |

### 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국가유공자 등 단체에 대한민국의순직국군장병유족회 추가(안 제3조제10호 신설)

- 개정안에 따라 대한민국의순직국군장병유족회를 설립하는 경우 동 단체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  - 국가보훈부는 대한민국의순직국군장병유족회 회원수를 28명으로 추정
    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의 적용대상인 재해사망군경의 유족 28명
  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5호의 적용대상인 순직군경 유족 0명
  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16개의 보훈공법단체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급 기준에 따라 산출하며,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, 4·19민주혁명회, 4·19혁명희생자유족회, 4·19혁명공로자회 등 4개 단체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참고하여 추계
- 4개 소규모 보훈공법단체의 유급 임·직원은 6~8인(임원 1~2인, 직원 5~6인) 규모로, 대한민국의순직국군장병유족회의 유급 임직원은 7인으로 가정

[표 3] 소규모 보훈공법단체의 유급 임·직원 현황

(단위: 명)

|              | 회원수 | 유급임직원 |    |    |
|--------------|-----|-------|----|----|
|              |     | 합계    | 임원 | 직원 |
|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  | 4   | 6     | 1  | 5  |
| 4·19민주혁명회    | 138 | 8     | 2  | 6  |
| 4·19혁명희생자유족회 | 180 | 7     | 2  | 5  |
| 4·19혁명공로자회   | 240 | 7     | 2  | 5  |

자료: 국가보훈부

- 2024년 예산 기준 4개 소규모 보훈공법단체의 유급 임·직원의 1인당 인건비는 2,430만원 수준

[표 4] 소규모 보훈공법단체의 유급 임·직원의 연간 인건비 현황

(단위: 명, 백만원)

|              | 임직원 | 인건비 총액 | 1인당 인건비 |
|--------------|-----|--------|---------|
|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  | 6   | 147    | 24.5    |
| 4·19민주혁명회    | 8   | 194    | 24.3    |
| 4·19혁명희생자유족회 | 7   | 169    | 24.1    |
| 4·19혁명공로자회   | 7   | 169    | 24.1    |
| 합계(평균)       | 28  | 679    | 24.3    |

주: 2024년 예산 기준

자료: 국가보훈부

[표 5] 대한민국순직국군장병유족회 인건비 추계(2024년 기준)

(단위: 명, 백만원)

|                   | 인원 | 1인당 인건비 | 총계  |
|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|-----|
| 대한민국순직국군장병<br>유족회 | 7  | 24.3    | 170 |

- 2024년 예산 기준 4개 소규모 보훈공법단체의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와 운영비는 평균 2억 400만원 수준

[표 6] 소규모 보훈공법단체의 운영비 및 사업비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|              | 운영비 | 사업비 | 합계  |
|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
|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  | 50  | 95  | 145 |
| 4·19민주혁명회    | 102 | 0   | 102 |
| 4·19혁명희생자유족회 | 78  | 397 | 475 |
| 4·19혁명공로자회   | 91  | 3   | 94  |
| 합계           | 321 | 495 | 816 |
| 평균           | 80  | 124 | 204 |

주: 2024년 예산 기준

자료: 국가보훈부

## 나.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대한민국순직국군장병유족회를 설립하는 경우 동 단체의 인건비, 운영비, 사업비 등 보조금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3억 8,200만원 등 2029년까지 5년간 19억 9,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됨

[표 7] 대한민국순직국군장병유족회 설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(2025~2029)

(단위: 백만원)

|     | 2025 | 2026 | 2027 | 2028 | 2029 | 합계    |
|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|
| 인건비 | 174  | 177  | 181  | 185  | 189  | 906   |
| 운영비 | 82   | 84   | 86   | 87   | 89   | 428   |
| 사업비 | 126  | 129  | 132  | 135  | 138  | 660   |
| 합계  | 382  | 390  | 399  | 407  | 416  | 1,994 |

## 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## V. 작성자

☐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행정비용추계과 | 전수연 | 김안나 |

☐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      |
| 전수연 | 02-6788-4667 | syjeon@assembly.go.kr |